

OnLine 중재상담실



합의하지 않은 부분을 교묘히 편집해서 방송

저는 서울시 소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모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어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정식 인터뷰를 하기 전에 사건내용에 관하여 방송국 PD와 서로의 주장을 얘기하였고, 이후에 방송을 위한 정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정식 인터뷰 부분에 대하여만 방송에 내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송에는 정식 인터뷰 전에 서로가 주장과 의견을 교환하는 내용들이 몰래 녹음 및 촬영되어 정식 인터뷰한 내용과 교묘히 편집된 채 저의 의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이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이 제가 근무하는 구청 홈페이지에 방송내용을 비난하는 모욕적인 글을 올리고 심지어는 저의 자녀들까지 비방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방송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얼굴은 나오지 않았으나,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방송에 나왔다면 전화를 걸어 '뭐 잘못된 것 있냐'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자녀들이 방송사에 의해 무분별하게 편집된 인터뷰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 더 견디

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사과라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우선 언론사가 사전 인터뷰 범위를 넘어 몰래 녹음과 촬영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론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나, 인터뷰 내용이 언론사의 왜곡된 편집을 거쳐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된 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통해, 정정이나 반론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거나 귀하의 반박 의견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방송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음에도 주위 사람들이 귀하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인터뷰의 사전 동의가 어디까지였는지 여부가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문의하신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조정신청을 하려면 소정의 양식을 갖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민간언론 피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채 방송

지난 2월 말쯤, 야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새벽시간대에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3일 자 모 방송 9시 뉴스에서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당시 제가 강도를 당하던 모습을 찍은 CCTV 녹화자료를 방영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의 칼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는 제가 아닌 다른 피해자분이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을지도 걱정되지만 더 무서운 것은 혹시라도 나중에 범인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화면에 나온 제 얼굴을 알아보고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귀하는 초상권 침해로 우리 위원회를 통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범죄보도에 있어 범죄사실 자체를 보도하는 것은 알 권리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나, 알 권리의 범위는 범죄사실 보도 자체에만 미칠 뿐 피해자가 누구인지까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청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보도일로부터 6월 이내이며 방송의 경우 보도내용으로 녹취특과 방송테이프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뉴스 방송에 대해

지난 3월 14일 모 방송사가 방송한 뉴스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터뷰 당일 해당 기자가 분명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앞뒤 정황도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방송에서는 인터뷰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왜곡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보도로 인해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쾌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정보도가 아닌, 사실관계와 관련된 사람들 앞에서 기자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는 해당 방송사 뉴스에 인터뷰한 내용이 언론사의 왜곡된 편집을 거쳐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된 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통해, 정정이나 반론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거나 귀하의 반박 의견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사는 데스크의 주관 아래 취재자료를 가감 및 정리할 수 있는 "편집"이라는 과정이 있지만 보도를 취사선택함에 있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취재 대상자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보도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문의하신 해당 기자 및 관련 사람들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아니며, 덧붙여 언론사의 사과문 게재 또한 위헌이므로 현행법상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정당 사진만 게재한 일간신문

저희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을 보고 불공정 보도라고 생각되어 문의합니다. 5월 20일자 00신문 3면을 보면 5.31 지방선거 관련 사진 6장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중 5장이 한나라당 사진이고 나머지 1장은 무소속 후보 사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다른 정당 후보들도 많이 있고 이들도 열심히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 정당만을 소개하는 것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언론사에 이를 시정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문의하신 기사에 대해 모니터를 거친 후, 선거법 및 심의기준 등을 위반할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건으로 상정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397-3062~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